

## 감사청구심의회 2023년 제4차 회의록

|         |  |
|---------|--|
| 1. 일 시  | 2023. 12. 22.(금) 15:30~17:40   |
| 2. 장 소  |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실   |
| 3. 참석자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부위원장: 최기정</li><li>○ 위원: 5명(양나래, 양지인, 이혜련, 김상범, 주용학)</li><li>○ 간사: 박홍권 시민감사팀장</li><li>○ 관계자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청구인: 11명</li><li>- 관계공무원: 4명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서대문구 기획예산과 정책조정팀장 정경자 외 1명</li><li>▶ 도봉구 자원순환과 도시청결팀장 김정숙 외 1명</li></ul></li></ul></li></ul> |
| 4. 회의내용 | 별지 기재와 같음  |

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“2023년 제4차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결과”와 같이 결정하고, 별첨과 같이 “2023년 제4차 감사청구심의회” 회의록을 작성한다.

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     이혜련 01822

## 1. 위원장 개회 선언

## 2. 간사 성원보고: 전체 재적위원 11명 중 6명 출석

「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」  
제18조(심의회의 운영 등) 제3항에 의거 성원 충족(※재적위원 과반수 출석)

## 3. 안건 심의

### [안건 설명] 제2023-4호

○ 『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』 주민감사 청구의 건

#### [의견진술] 청구인 대표, 서대문구 기획예산과 관계 공무원

#### [발언요지]

○ ○○○ 위원

- 구청에서 각 동에 보낸 13기 주민참여예산위원 추천 요청 공문에 추천 인원 동별 반장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, 청구인 입장에서는 동별 반장 3명은 반드시 추천이 되어야 된다로 해석될 것임.  
반장 등 3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중에 반장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이의가 없겠지만 반장 3명으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동장한테 반장 3명을 지명하라는 그런 취지로 제3자가 봤을 때는 받아들여지고 있어 납득할 수 없음.

○ ○○○ 위원

- 저도 큰 틀에서는 이게 관치나 그런 건 같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처리 가 미숙하고 문제점들이 있음.

공문 내려보낼 때 반장 3명이라고 명시하여 보낸 것도 있고,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명확한 내용이 없음.

-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에 동별 추천을 1명으로 돼 있는데 1명을 해야지 평가 토론회에서 3명이라고 논의했어도 동별 추천을 3명으로 한 것은 잘못되었음.

두 번째 조례 정의에 보면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정의 예산 과정에 예산의 편성, 집행, 결산 등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으므로 결산 과정이 들어가야 하므로 결산 시 주민 의견 받아서 하여야 함.

### ○ ○○○ 위원

- 명문이라든지 절차 조례로 제정됐으면 조례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.  
국장, 구청장에게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하고  
그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느슨하게 하니까 문제 제기가 되고 있음.  
지방자치는 주민 자치이고,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에 의해서 주민을 위한  
행정을 해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함.
- 하지만 서대문구 담당과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현저히 해  
칠 정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 각하 의견을 제시함.

### ○ ○○○ 위원

- ○○○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, 기타 의견은 같음.

[심의결과] “각하”(수리: 2, 각하: 4)

[안건 설명] 제2023-5호

○ 『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관련』 주민감사 청구의 건

[의견진술] 청구인 대표, 도봉구 자원순환과 관계공무원

[발언요지]

### ○ ○○○ 위원

- 민간 위탁을 하였을 때 몇 억 이상의 보조금이 나갔을 경우 외부 회계 검증을  
받도록 되어 있는데, 도봉구는 예산 규모가 거의 50~60억임에도 2016년에 받고  
몇 년 동안은 외부 회계 검증이 없었으며, 이 정도 규모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 
도 외부 회계 검증을 받아야 하는 금액임.
- 청구인들 주장을 들어보니 감사청구서에 기재된 내용 이상으로 매우 심각하고,  
정산이라는 것이 영수증과 그 금액을 대조하는 작업이라서 단순해 보이겠지만  
법에서 외부 회계 검증을 받도록 하는 취지는 그만큼 공신력이 있는 회계사의  
독립적인 판단을 받으라는 뜻으로 외부 회계 검증을 받지 않고 도봉구 담당 공  
무원들이 이것을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.

-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정산할 때 예를 들어 마스크를 50개 구매해서 50개를 나눠 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25개만 나눠줬고, 서류상으로는 50개를 다 한 걸로 이미 계산서는 발행됐고 서류가 작성되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음.
- 그럼 공무원들은 50개가 계산서로 발행이 됐으니까 맞네라고 정산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, 실질적으로 작업자들은 못 받았고 업체에서 속인 것으로 그것을 공무원들이 검증 못하니까 외부에 맡겨야 하는데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음.

### ○ ○○○ 위원

-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3개 사 3년 전체 예산이 287억, 연 100억 정도 되는데 3개 사로 나누면 1개 사별 98억, 87억, 102억이고, 3년으로 나누더라도 몇십억씩 되고 있음.
- 그런데 이 3개 사에서 이 노무비, 복리후생비를 제대로 안 줬다고 청구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.
- 현장에서는(업체에서는) 예를 들면 간이영수증 처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, 전자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간이세금계산서 이런 것으로 하니까 부풀리기식 증빙을 했을 때, 예를 들어서 1인이 사용해야 할 걸 4인이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숫자만 맞추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도봉구에서 일일이 체크 못 할 수도 있으므로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음.
- 수리에 동의하며, 이 부분은 한번 감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.

### ○ ○○○ 위원

- 구청 의견을 들어보니 구청은 우리는 하나도 잘못이 없고, 다 규정대로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회계 문제는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건데, 청구인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구청 직원 한두 사람이 그걸 일일이 다 점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문제가 많은 것 같음.
- 회계감사를 표본으로 먼저 해보고 문제가 심각하면, 나머지 24개 구청을 추가로 감사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할 사항 있으면 개선하는 게 좋겠음.

### ○ ○○○ 위원

- 이 건은 회계감사보다 더 중요한 게 회계감사를 하면 사실은 회계는 그냥 맞춰

놓을 수 있고, 회계사들이 봐도 100% 알 수는 없는데 실제 관행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임.

-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계적인 내용과 관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걸 볼 필요가 있고, 두 번째로는 도봉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청소 용역은 25개 구 청이 다 똑같다고 보고,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다른 구에도 분명히 있을 것임.
- 서울시 전체를 한번 짚어보고 제도 개선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음.

[심의결과] “수리”(수리: 6, 각하: 0)

#### 4. 위원장 폐회 선언

작성자 : 간사 박 흥 권

